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43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 박대수·정동만·윤주경

서범수 · 김희곤 · 김영식

구자근 • 권영세 • 김석기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해 조사,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 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 및 제116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 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 2. 제76조의2를 위반한 사용자

제116조제1항제2호 중 "제74조제7항"을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벌칙) <u>제31조제3항에 따</u>	제111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u>
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	<u>하나에 해당하는</u>
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	,
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
	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
	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
	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u><신 설></u>	2. 제76조의2를 위반한 사용자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16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	2
2조, 제48조, 제66조, <u>제74조</u>	<u>제74</u>
<u>제7항</u> , 제91조, 제93조, 제98	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부터
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제5항까지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